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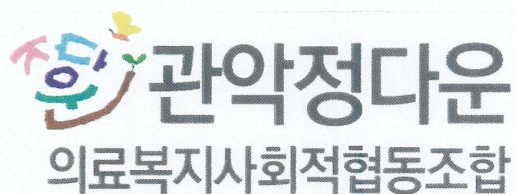
제 7차 대의원 정기총회 의사록

일시 :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110)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 고시 제2021-248호(2021. 6. 11.)에 따른 의사록 공증 제외대상 법인임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 7차 대의원 정기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26년 2월 12일(목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년 3월 7일(토요일) 오전 10시

나. 장소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110)

3. 참석자

가. 재적 대의원 : 94명

나. 대의원 명단(가나다 순)

| | | | | | | | | | |
|-----|-----|-----|-----|-----|-----|-----|-----|-----|-----|
| 강선희 | 구명숙 | 김근례 | 김동경 | 김명철 | 김미희 | 김선아 | 김숙희 | 김순복 | 김영애 |
| 김인순 | 김장전 | 김재필 | 김진아 | 김진옥 | 김진희 | 김한울 | 김혜정 | 김효순 | 김흥열 |
| 김희연 | 나현진 | 나호정 | 남일 | 류미정 | 민동희 | 박경란 | 박기례 | 박명환 | 박미호 |
| 박봉희 | 박상원 | 박선미 | 박승한 | 박윤희 | 박인해 | 박정란 | 박정열 | 박진규 | 박희선 |
| 배문호 | 배지용 | 서미란 | 서병훈 | 선영주 | 신경숙 | 양선영 | 여용옥 | 오미옥 | 오용석 |
| 오웅 | 우윤정 | 원윤아 | 유경아 | 유현만 | 윤소진 | 이규엽 | 이남희 | 이명애 | 이병희 |
| 이수범 | 이영우 | 이예순 | 이은영 | 이종열 | 이종환 | 이주영 | 이준구 | 이현주 | 이현희 |
| 이호분 | 이훈희 | 임선희 | 장남희 | 전미리 | 정민숙 | 정보영 | 정성광 | 정순영 | 정승혜 |
| 정은진 | 조성호 | 조수호 | 조연향 | 조윤호 | 진우성 | 차의원 | 천선희 | 최지영 | 한황화 |
| 허필두 | 현은주 | 홍관석 | 황인오 | | | | | | |

다. 출석 대의원 : 55 명

| | | | | | | | | | |
|------|-----|-----|-----|-----|-----|-----|-----|-----|-----|
| 구명숙 | 김명철 | 김미희 | 김선화 | 김숙희 | 김인순 | 김장전 | 김재필 | 김진아 | 김진옥 |
| 김진희1 | 김혜정 | 김효순 | 김희연 | 류미정 | 민동희 | 박경란 | 박기례 | 박명환 | 박미호 |
| 박봉희 | 박상원 | 박선미 | 박승한 | 박윤희 | 박정열 | 박진규 | 박희선 | 배문호 | 여용옥 |
| 오미옥 | 우윤정 | 유현만 | 윤소진 | 이남희 | 이명애 | 이병희 | 이영우 | 이예순 | 이종열 |
| 이종환 | 이주영 | 이현희 | 임선희 | 전미리 | 정민숙 | 정성광 | 정승혜 | 정은진 | 조수호 |
| 조윤호 | 최지영 | 한황화 | 현은주 | 황인오 | | | | | |

4. 총회 안건

- 제 1호 의안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제 2호 의안 2025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
- 제 3호 의안 2025년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제 4호 의안 2025년 잉여(손실)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제 5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제 6호 의안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 제 7호 의안 2026년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 제 8호 의안 기타 의안의 건
- 제 9호 의안 2030 비전 워크숍(운영)의 건

5. 총회 내용

이사장 구명숙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회의에 앞서 생명의례로 묵념을 진행하다.

1)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사무국장 황미영의 보고로 전체 재적 대의원 94명 중 현재 55명의 출석으로 총회 성립의 요건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민주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자 전원 ‘안전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회의를 위한 정다운 약속’ 을 함께 읽다.

2)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서기와 기명날인인 선정에 대해, 지명과 추천 중 의장의 지명 방식으로 할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다. 대의원 박선미가 동의하고 대의원 김혜정이 재청하다.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한 서기로 이사 정유미를 지명하고 수락 의사를 확인하다.
- 의장이 기명 날인인으로 회의 참석자 중 대의원인 김진아, 민동희, 정성광을 지명하고 수락 의사를 확인하다.
-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3)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타 안건 발의 여부를 묻고, 기타 안건 발의가 없음을 확인하다.
- 의장이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 확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의원 배문호의 동의와 대의원 박미호의 재청에 이어 대의원 전원의 박수로 의사일정을 확정하다.

4) 전차 의사록 승인

- 의장이 전차 의사록 확인 후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 의장이 전차 의사록 승인 건에 대해 질문 및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의원 조수호의 동의와 대의원 김명철의 재청에 이어 대의원 전원의 박수로 전차 의사록을 승인하다.

5)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이 의안 제1호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민앵 감사에게 사업 감사 보고를, 배문호 감사에게 회계 감사 보고를 요청하다.
- 민앵 감사가 사업 감사 결과를 보고하다.
- 배문호 감사가 회계 감사 결과를 보고하다.
- 의장이 사업감사 결과와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 대의원 박봉희가 의료사업 회계업무 흐름도를 첨부하고 설명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다. 대의원 김진희가 의료사업 외에 조합사업의 회계 흐름도도 첨부할 것을 요청하다. 그 외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 의장이 제1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 후, 대의원 이현희의 동의와 대의원 박봉희의 재청에 이어 대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 의장이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채택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6) 제2호 의안. 2025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의안 제2호 2025년 사업 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황미영 사무국장에게 사업 보고를 요청하다.
- 황미영 사무국장이 2025년 사업보고를 진행하다. 영상으로 2025년 조합 활동을 보고하고, 출자금 총액이 2024년 266,060,000원에서 2025년 282,620,000원으로 변동됨을 고지하다.
- 황미영 사무국장이 2025년 결산안을 보고하다.
- 의장이 사업보고와 결산안에 관한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 대의원 임선희가 사업보고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도 공유할 것을 요청하다.
- 대의원 김혜정이 재무상태표 내 미처리결손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황미영 사무국장이 적자구조의 결손금이 누적됐고 작년 결손금에서 이익잉여금을 제한 금액이라고 답하다. 의장이 적자구조 결산금은 의원 확장 이전 등 투자금이라고 보충 설명하다.
- 대의원 박봉희가 운영성과표 내 전기오류 수정손실 내용에 대해 질문하다. 황미영 사무국장이 의료급여 청구상 지급 불능건이 누적된 부분임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제2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 후, 대의원 이종열의 동의와 대의원 정성광의 재청에 이어 대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 의장이 제2호 의안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7) 제3호 의안. 2025년 탈퇴 조합원 출자금환급 승인의 건

- 의장이 의안 제3호 탈퇴 조합원 출자금환급 건에 대해 의장 구명숙이 설명하다.
- 2025년 탈퇴조합원 16명의 환급금 3,460,000원의 승인을 요청하다. 의장이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고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 대의원 배문호가 탈퇴 시 출자금 기부가 환급에 포함된 후 기부 처리되었는지 질문하다. 구명숙 이사장이 그러함을 확인하다.
- 의장이 제3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 후 대의원 윤소진의 동의와 대의원 김선아의 재청에 이어 대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 의장이 제3호 의안 2025년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승인 건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다.

8) 제4호 의안. 2025년 잉여(손실)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의안 제4호 손실금 처리 승인 건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손실금 처리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고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 의장이 제4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 후 대의원 여용옥의 동의와 대의원 조수호의 재청에 이어 대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 의장이 제4호 의안 2025년 잉여(손실)금 처분(안) 승인 건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다.

9) 제5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제5호 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정유미 이사이자 정관규약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정유미 이사가 정관 변경 내용은 자료집 139쪽이라고 안내하며, 이번 정관 개정안은
 - ① 조합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사업의 종류 추가,
 - ② 조합원 제안권 관련 조항 신설,
 - ③ 대의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세 가지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정유미 이사가 첫 번째 안건은 전년도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상급기관 검토 과정에서 반려되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으며, 반려 사유는 사업의 종류 문구에 '설치 및 운영' 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하다.
- 정유미 이사가 두 번째 안건은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취지를 반영하여, 일반 조합원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2주 전까지 이사장에게 서면 제출하면 총회 의결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 제안권 조항이라고 설명하다.
- 정유미 이사가 세 번째 안건은 대의원 임기를 임원 및 감사 임기와 같은 3년으로 조정하여 중장기 사업계획과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의장이 질의 및 의견이 있는지 묻다.
- 대의원 배문호가 두 번째 안건인 조합원 제안권과 관련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는 현재 조합 규모상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다. 또한 실효성을 위해 10분의 1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의장이 배문호 대의원의 의견이 제5호 의안 전체에 대한 반대인지 묻고, 배문호 대의원이 두 번째 안건에 한한 반대 의견을 확인하다.
- 대의원 이종열이 기타안건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 조합원 제안권 조항을 두는 취지가 무엇인지 질문하다.
- 정유미 이사가 기타안건 상정은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만 가능하므로, 본 조항은 대의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게도 공식적인 제안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 대의원 김혜정이 조합원 제안권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조합원 규모에서 5분의 1 기준은 일반 조합원의 제안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발언하다. 이어 이번 정관개정안에서는 두 번째 안건을 제외하고, 추후 조합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다.
- 대의원 이종열이 배문호 대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조합원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려면 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고, 대의원들도 추천해 준 조합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다.
- 대의원 임선희가 5분의 1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현재는 일반 조합원이 공식적으로 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으므로 우선 제도적 창구를 열어두고 추후 정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발언하다.

- 대의원 이현희가 조합원 제안권 행사 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서면인지, 온라인도 가능한지 질의하다.
- 의장이 세부 방식은 향후 규정과 규약으로 정비할 사항이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 관례에 따라 온라인 서면이나 서명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다.
- 회의 진행 과정에서 수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다.
- 대의원 박봉희가 수정 제안이 있으면 동의와 재청을 거쳐 수정동의안으로 성립시킨 후 그 가부를 먼저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사진행 발언하다.

수정안 1 : 조합원 제안권 기준 5분의 1 → 10분의 1

- 대의원 배문호가 제5호 의안 중 두 번째 안건인 조합원 제안권 조항의 기준을 ‘조합원 5분의 1 이상’에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하다. 대의원 김선아가 동의하고, 대의원 박정열이 재청하다.
- 의장이 배문호 대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다.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찬성 19명으로, 수정안 1은 의결되지 못하다.

수정안 2 : 두 번째 안건 제외

- 대의원 김혜정이 제5호 의안 중 두 번째 안건인 조합원 제안권 관련 조항을 이번 정관개정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만 의결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다. 대의원 박진규가 동의하고, 대의원 황인오가 재청하다.
- 의장이 김혜정 대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다.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찬성 15명으로, 수정안 2 역시 의결되지 못하다.
- 의장이 두 수정안은 의결되지 않았으나, 대의원들이 제기한 의견은 충분히 숙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정리하다.

정관개정안 처리 방식 변경

- 이어 박명환 대의원이 제5호 의안의 세 가지 항목을 일괄 처리하지 말고, 각각 개별 안건으로 나누어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다.
- 의장이 정관개정안의 1안, 2안, 3안을 개별 상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제안하고,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대의원 이종환이 동의하고, 대의원 이종열이 재청하다.
- 의장이 개별 상정 방식에 대해 찬반을 묻고, 반대가 없음을 확인하다.
- 의장이 제5호 의안은 세 개의 안건으로 나누어 개별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정리하다.

제5호 의안 제1안 : 사업의 종류 추가

- 의장이 제5호 의안의 첫 번째 안건인 조합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안을 상정하다. 대의원 이종열이 동의하고, 대의원 임선희가 재청하다.
- 의장이 반대 및 기권 의사가 있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 의장이 제5호 의안 제1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제5호 의안 제3안 : 대의원 임기 3년

- 의장이 순서를 조정하여 제5호 의안의 세 번째 안건인 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다. 대의원 김장전이 동의하고, 대의원 이현희가 재청하다.
- 의장이 반대 및 기권 의사가 있는지 묻다.

- 의장이 대의원 이종환 1인이 반대하여 기록을 요청하다.
- 의장이 제5호 의안 제3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5호 의안 제2안 : 조합원 제안권 관련 조항

- 의장이 제5호 의안의 두 번째 안건인 조합원 제안권 관련 조항을 상정하다. 대의원 정성광이 동의하고, 대의원 윤소진이 재청하다.
- 의장이 찬성 의견을 먼저 묻고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다. 찬성 14표, 반대 22표, 나머지 기권으로 집계되다.

의장이 제5호 의안을 개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찬반 의사 확인 후 정관 제60조와 정관 제28조에 대해 변경을 승인하고 정관 제32조의 2건에 대해서는 추후 숙고 후 재논의하기로 하다. 대의원 전원 이 박수로 동의하다.

- ① 제60조 사업의 종류 추가(변경) 안은 통과,
- ② 제32조의2 조합원 제안권 관련 조항은 부결,
- ③ 제 28조 대의원총회 대의원 임기 3년 변경 안은 통과

의장이 제5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 건이 개별 원안으로 통과 및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정관변경(안) 최종 승인 사항 | |
|---|---|
| 조합 사업 범위의 확대를 위한 사업의 종류 추가 - 제60조(사업의종류) ①항 변경 | |
| 변경 전 | 변경 후 |
| <p>제60조(사업의종류)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나. 부대시설의 개설 및 운영 2. 지역 보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한 사업 | <p>제60조(사업의종류)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2. 보건예방, 운동,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및 그 밖의 노인복지서비스사업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5. 돌봄사회서비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6. 자원봉사활동 7. 의료인, 보건복지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나. 1~8호의 사업 활성화 및 통합을 위한 지원사업 |
| 대의원의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제28조(대의원총회) ③항 임기 변경 | |
| 변경 전 | 변경 후 |
| <p>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p> <p>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p> | <p>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p> <p>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p> |

| | |
|--|---|
| <p>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p> <p>③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p> <p>⑦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p> | <p>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p> <p>③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p> <p>⑦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p> |
|--|---|

10) 제6호 의안.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의안 제6호 2026년 사업계획 건에 대해 황미영 사무국장과 부서장들에게 설명과 질의 사항 응답을 요청하다.
- 영상으로 2026년 조합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황미영 사무국장이 2026년 예산안을 보고하다.
- 의장이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 대의원 이종환이 예산에 포함된 직원 채용계획에 대해 질문하다. 황미영 사무국장이 총회 자료집 16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재택의료센터 확대를 위한 의료진 및 사회복지사등의 채용 계획이 있으며 계획에 따른 인건비가 예산(안)에 반영되어있음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제7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 후 대의원 박미호의 동의와 대의원 여용옥의 재청에 이어 대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 의장이 제7호 의안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11) 제7호 의안. 2026년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 의장이 의안 제7호 2026년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에 대해 관련 내용의 설명을 하고 질의 사항 응답을 요청하다.
- 의장이 제7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 후 김효순 대의원 동의와 대의원 박희선의 재청에 이어 대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다.
- 의장이 제7호 의안 2026년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12) 제9호 의안. 2030 비전 워크숍의 건

- 구명숙 이사장이 2030 로드맵을 설명하고 박상원 이사가 2030 로드맵을 위한 설문 결과를 요약 발표하다.
- 아래 6가지 주제로 대의원이 의견을 나누다.
 - ① 조합의 재정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② 2030년 우리 조합에는 어떤 거점 공간(사업소와 활동 공간)이 필요할까요?
 - ③ 정다운우리의원이 조합원의 주치의 병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④ 추후 당신이 재택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나요?
 - ⑤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때 어떤 서로돌봄이 필요할까요?
 - ⑥ 우리 조합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13) 의안통과 선포

- 의장이 모든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14)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다. 전원 동의와 재청으로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7차 대의원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026. 3. 7.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6년 7차 대의원 정기총회



의장 구명숙



의사록 기명날인인 대의원 김진아



의사록 기명날인인 대의원 민동희



의사록 기명날인인 대의원 정성광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 고시 제2021-248호(2021. 6. 11.)에 따른 의사록 공증 제외대상 법인임